■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1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